#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길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 1363 |
|---|---|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종길,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옥,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지, 문성호, 박상혁, 박ㆍ석, 박중화,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승복, 이은림,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허ㆍ훈, 황유정, 황철규 의원(40명)

## 1. 제안이유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도로수송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무제한 이용통합 요금제를 도입하여 승용차 이용감소 등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아울러 고물가 장기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서민층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립을 위한 파격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높은 시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운송손실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최초 사업으로 ’24년 1월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운영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3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문서번호 | 2023101200000010 |
|---|---|

# 비 용 추 계 서

| | |
|---|---|
| 요 청 인 : 김종길 의원 | 담 당 : 오희선 과장<br>이정수 팀장<br>김지혜 주무관 |
| 접 수 일 : 2023.10.12. | |
| 회 신 일 : 2023.10.13. | 내용문의 : 02-2180-7953 |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Ⅰ.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기후동행카드 사업)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서울시 도시교통실 제공 자료 준용

○ 월 예상 이용객을 약 50만 명으로 전제

○ 인당 월 혜택은 3만 원으로 전제

○ 월 손실금의 약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24~2028년)

라. 방법

○ 서울시 도시교통실 제공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450,000,000천원 (연평균 90,000,000천원)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4) | 2차년도 (2025) | 3차년도 (2026) | 4차년도 (2027) | 5차년도 (2028)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운송손실 지원비 (안 제3조의3)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450,000,000 |
| | 소계(b)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450,000,000 |
| □총 비용(b-a) |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450,000,000 |

주: 서울시 도시교통실 제공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운송손실 지원비(제3조의3)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450,000,000천원

○ 연평균 비용 ≒ 90,000,000천원

나. 운송손실 지원비 ≒ 450,000,000천원

○ 산출방식 = 월 손실금 × 개월 × 손실률 × 5년
= 15,000,000천원 × 12개월 × 50% × 5년
= 450,000,000천원

※ 서울시 도시교통실 제공 자료 (기후동행카드 사업)

▸ 월 예상 이용객: 약 50만 명

▸ 인당 월 혜택: 3만원
(60회 이용시 90,000원 - 65,000원 + 따릉이 5,000원)
※ 지하철 1,400원(’ 23. 10. 150원 인상 예정), 시내버스 1,500원 기준

▸ 월 손실금 : 150억원(3만원 * 50만명)

▸ 연 재정지원 : 900억원(150억원 * 12개월 * 50%)
※ 월 손실금의 약 50% 지원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br>(2024년) | 2차년도<br>(2025년) | 3차년도<br>(2026년) | 4차년도<br>(2027년) | 5차년도<br>(2028년) | 합 계 |
|---|---|---|---|---|---|---|
| 운송손실<br>지원비<br>(안 제3조의3)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90,000,000 | 450,000,000 |

주: 물가상승률 미반영